

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(투약 측면)

1 투약

투약에 의한 사고의 과실판단은 문제된 약제의 약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. 투약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확인의무,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의무, 투여한 약제의 확인의무, 복용방법의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가 포함된다. 이러한 주의의무를 가진 의사가 실제로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당해 질병 및 그 증상의 정도에 어떠한 약제가 가장 적합하고 그 용량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. 약품설명서에 지시된 용법과 용량을 투여 하였고 그 결과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위 약제의 선택이 당시의 의학기술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등 제반 기준에 합당하다면 과실을 부인 하고 있다. 의사는 약제를 선택하여 투여 할때 그 약제의 효능과 이에 따른 금기, 부작용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.

2. 관련판례

■ 판례 1

투약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 하였더라도 투약이 적정 하였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다. 치료 당시 국내에서 동 치료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고 부작용이 없는 다른 대체약품도 없었으며 위독한 상태의 환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가족의 동의 없이 위 치료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도 위 후유증이 병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.(서울동부지원1991.10.9.88가합20881)

■ 판례 2

카나마이신 투여후 난청을 일으킨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. (대법원1985.8.13선고85다카372판결)

■ 판례 3

약물에 대한 과민성 이상소인자임을 예지할 방법이 없는 과민반응의 결과까지를 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(일본 오오사카 고등재판소, 1972. 11. 21. 판결, 판시 No. 697. 55).